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7. 4.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7. 4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,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신설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범위 정비: 5개 위원회 초과 불가→3개 위원회 초과 불가(안 제3조의2)
- 나. 상위법 위임사항 반영(안 제7조)
- 다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 신설(안 제41조)
- 라. 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 조성 및 사용 기준 신설(안 제4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, 「건축물관리법」, 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: 2024년 당초예산 편성예정
- 다. 합 의
 - 1) 행정과장(인사담당), 재무과장(재산담당), 기획예산담당관(예산담당) 합의 완료
 - 2)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평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762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5. 2. ~ 2023. 5. 22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: 붙임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3조의 5 및 별표1 제4호 거목”을 “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0.5미터 이상”을 “0.5미터 이상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6항 중 “5개”를 “3개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”을 “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.

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: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

2.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:
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

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(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건축안전센터(이하 “건축안전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11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
2.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
3.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·관리
4.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
5. 지진·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
6. 건축물의 점검, 개량·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
7.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2조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2.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

3.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

4. 그 밖에 수입금

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·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

2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·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용자 비용

3.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·점검 비용

4.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

5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·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

6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

7.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비용

8.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·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·검사·업무대행 비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,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 후에 비하여 건축주,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2(다중생활시설 기준) 열 제3조의 5 및 별표1 제4호 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,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가능한 유효폭 <u>0.5미터이상</u>, 유효 높이 1.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.</p> <p>제3조의2(구성 및 임기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<u>5개</u>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2개의 다른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 략)</p> <p>제6조의2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· 예치방법 및 반환</p>	<p>제2조의2(다중생활시설 기준) 열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0.5미터 이상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의2(구성 및 임기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3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의2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등의 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예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(생략)

나. 예치방법 : 현금 또는 영
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
증서(수납·반환 절차는
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
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
규칙」을 따른다)

3.·4. (생략)

제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법
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
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
같다.

<신설>

제12조(대지의 조경) ① ~ ④ (생
략)

⑤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
여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
에 관한 훈령」-----

3.·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
----- 같은 법 시행규
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
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
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납
부해야 하는 ---.

②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
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
로 납부해야 한다.

제12조(대지의 조경) ① ~ ④ (현
행과 같음)

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
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
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16.11.10. 조2301>

1. 공장(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) 및 물류시설(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)

가. 연면적의 합계가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: 대지면적 7퍼센트 이상

나. 연면적의 합계가 1,500제곱미터 이상 2,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: 대지면적 3퍼센트 이상

<신 설>

의 조정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: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

2.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: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

제41조(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건축안전센터(이하 “건축안전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」
제11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
리지원센터 업무
2.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
산확보 및 집행
3.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
운영·관리
4.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
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
5. 지진·화재 등 건축물 부문
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
6. 건축물의 점검, 개량·보수에
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
7.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
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사항

<신 설>

제42조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
및 운영) ① 군수는 법 제87조
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
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
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
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
있다.

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
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2.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

3.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

4. 그 밖에 수입금

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·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비용

2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·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용자비용

3.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·점검 비용

4.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

5.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

관리 관련 실태조사·검사 및
안전점검 비용

6.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6조제3
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

7.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
행을 위한 조사 및 점검 비용

8.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
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
난·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
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사업의 조사·검사·업무
대행 비용

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약

가. 관련 조문

- 건축법 제87조의2 제2항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
- 건축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5항(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등)

나. 비용발생 요인: 건축안전센터 필수 전문인력 배치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1) 사업대상: 필수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약 110,000천원

2) 사업규모: 전문인력 2명 채용[건축사1, 건축구조분야1]

- 건축사 : 약 60,000천원(6급 상당) * 1명 = 60,000천원
- 구조분야(고급이상) : 약 50,000천원(7급 상당) * 1명 = 50,000천원

※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기준으로 채용예정자의 자격,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6급(상당)	79,257천원	52,811천원
7급(상당)	64,776천원	46,006천원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세출	군비	110,000	111,870	113,770	115,710	117,670	569,020

※ 공무원 보수 최근 5년 평균 인상률 1.7% 적용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4년 ~ 2028년 일반회계로 편성

(단위: 천 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재원 조달	의존재원	-	-	-	-	-	-
	자체재원	110,000	111,870	113,770	115,710	117,670	569,020
	기 타	-	-	-	-	-	-
	소 계	110,000	111,870	113,770	115,710	117,670	569,020

작성자: 건축개발과장 이 현 주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「건축법」

제17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 제1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9조,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

현행	개정
<p>제10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법 제11조·제14조·제16조·제19조·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6. 1. 18., 2006. 5. 12., 2008. 12. 11.></p> <p>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. <신설 2008. 12. 11.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9. 5. 11., 2007. 12. 13.></p> <p>[제목개정 1999. 5. 11., 2006. 5. 12.]</p>	<p>제10조(건축허가 등의 수수료) ①법 제11조·제14조·제16조·제19조·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1996. 1. 18., 2006. 5. 12., 2008. 12. 11., 2022. 11. 2.></p> <p>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. <신설 2008. 12. 11.></p> <p>③ 삭제 <2022. 11. 2.></p> <p>[제목개정 1999. 5. 11., 2006. 5. 12.]</p> <p>[시행일: 2023. 5. 3.] 제10조</p>

「건축법」

현행	개정
<p>제87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 ①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,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30., 2020. 4. 7., 2020. 12. 22.></p> <p>1. 제21조, 제22조,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·확인·검토·심사 및 점검</p> <p>1의2. 제11조,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</p> <p>2.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</p> <p>3. 삭제 <2019. 4. 30.></p> <p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[본조신설 2017. 4. 18.]</p>	<p>제87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30., 2020. 4. 7., 2020. 12. 22., 2022. 6. 10.></p> <p>1. 제21조, 제22조,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·확인·검토·심사 및 점검</p> <p>1의2. 제11조,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</p> <p>2.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</p> <p>3. 삭제 <2019. 4. 30.></p> <p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6. 10.></p> <p>1. 시·도</p> <p>2. 인구 50만명 이상 시·군·구</p> <p>3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(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)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·군·구</p> <p>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6. 10.>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6. 10.></p> <p>[본조신설 2017. 4. 18.] [시행일: 2023. 6. 11.] 제87조의2</p>

「건축법 시행령」

제119조의3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)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8. 6. 26.]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

제43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(이하 “지역건축안전센터”라 한다)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9. 2. 25., 2021. 6. 25.>

1.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

나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·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
⑤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

해당하는 전문인력(이하 “필수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의 규모·예산·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·운영하려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6. 15.]

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「건축물관리법」

제40조(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, 정보제공,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「건축법」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20조(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”라 한다)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,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.
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10.>

1.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
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
5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,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규모·예산·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이 경우,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.
-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.
-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,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고성군의회의원(이하 “군의원”이라 한다)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
 2.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
 3.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
- 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업무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「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」

- 제11조(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**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(이하 “건축물관리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
 2.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, 정보제공 등
 3. 빈 건축물 정비
 4.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